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교원정책과-1234(2023. 2. 23.)

2. 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」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소속 기관·학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내용 : 제2조제4호 신설

※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'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' 추가

나. 개정·시행일 : 2023. 3. 23.(목)

다. 기타 사항 : 각 기관에서 교직원·학생·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
- 붙임 1.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3-12호) 1부.
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 3.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각실과, 국립부설유초중고, 국립특수학교, 시도교육청



교육연구사 조수원 교육연구관 김명런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전결 2023. 3. 22.

협조자

시행 교원정책과-2032 (2023. 3. 22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(어진동) 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6562 팩스번호 044-203-6687 / ubehind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